

## **제 8 장 주민생활 지원**

제1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수립

제2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제4절.. 의료급여

제5절..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



# 제1절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3.7.30)으로 區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06년 전국적으로 일제히 제1기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매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 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여건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분야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중심의 복지구현을 위한 비전제시
- 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구민의 복지욕구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제시
- 다. 부문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별 수요 파악 및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방안 마련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 면 적 : 부산광역시 금정구(면적 65.13km<sup>2</sup>)
- 행정구역 : 17개동(서1~3동, 금사동, 부곡1~4동, 장전~3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1·2동, 금성동)

#### 나. 시간적 범위

- 적용년도 : 2007년 ~ 2010년(4개년) 전체 계획기간 중 2010년
- 시행년도 : 2010년 1월 ~ 12월 시행

### 3. 주요추진 사업(6개 부문 32개 사업)

부 문 별	사 업 명	사업구분
기초생활보장	1. 위기가정 신속 발굴 및 적기지원 실시	핵심사업
	2. 저소득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응자지원사업 실시	핵심사업
	3.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실	일반사업
	4. 차상위계층 심층지원 강화	일반사업
	5.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일반사업
	6.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일반사업
자 활 지 원	1. 저소득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추진	핵심사업
	2.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운영 내실화 등 일자리 추진	일반사업
	3. 자활근로사업 추진 내실화	일반사업
	4. 공익형 자활사업 활성화	핵심사업
	5.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추진	핵심사업
	6.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전자바우처) 지원	일반사업
	7. 노숙인 치료기능사업 추진	일반사업
	8. 노숙인 주거지원 및 시설이용 확대	일반사업
노 인 복 지	1.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일반사업
	2. 무료 경로식당 운영	일반사업
	3. 경로당 운영 활성화	일반사업
	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핵심사업
	5.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	핵심사업
장 애 인 복 지	1.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일반사업
	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일반사업
	3.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핵심사업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핵심사업
	5.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추진	핵심사업
보육·아동·청소년복지	1.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관리체계 강화	일반사업
	2. 부모 육아부담 경감	일반사업
	3. 청소년공부방의 내실 있는 운영	일반사업
	4. 공보육 기반 조성	핵심사업
여 성 복 지	1.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일반사업
	2. 소외계층 여성 복지지원 강화	일반사업
	3. 여성의 권익증진	일반사업
	4.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의 능력 개발	핵심사업

##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 1. 사업개요

#### 가. 의의 및 특성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나. 도입배경

-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 ▷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 선택구매
- 서비스 이용료 일부 본인부담으로 수요자 권리의식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 방지
-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

#### < 기존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의 차이 >

구 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 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요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
지 원 방 식	공급자에 대한 지원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서비스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형성 지원
사 업 방 식	중앙 기획/지방 집행 집중식·하향식(Top-down)	지방 기획/중앙 지원·평가 분권식·상향식(Bottom-up)

#### 다. 사업 유형

##### ○ 표준형 사업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

##### ○ 자체개발형 사업

지역특성·주민 수요 등을 감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업

〈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 비교 〉

구 분	표준형 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사업 개발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역할	사업 선택	사업 개발
제공기관 지정	복지부	지자체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 2. 2009년 사업현황 및 실적

### 가. 사업현황(총 8개 사업)

○ 표준형사업 1개 / 시개발형사업 6개 / 구개발형사업 1개

### 나. 총예산액(584,587천원) ▷ 국비 409,211천원 시비 157,376천원 구비 18,000천원

○ 표준형 339,333천원 / 시개발형 125,254천원 / 구개발형 120,000천원

### 다. 사업내용

○ 표준형 사업(국비 70%, 시비 30%)

- 사업명 :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 주요내용 : 취학전 아동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 수행기관 : 웅진씽크빅, 대교눈높이, 교원 등 8기관

○ 市 개발형 사업(국비 70%, 시비 30%)

#### ① 1·3세대 통합교육 「세대공감 Old & New」

- 주요내용 : 자연체험, 공예체험, 서예, 한문교육, 인성교육  
▷ 노인이 가르치고 아동이 학습·체험
- 수행기관 : 금정구 자활센터, 금정시니어클럽

#### ②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 주요내용 : 부산 해양도시에 대한 이해와 애郷심을 고취  
해양도시 탐험, 해양역사 탐험, 1박2일 체험캠프
- 수행기관 :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4개 기관

- ③ 근로자들의 근로의욕향상과 가족문제 예방 서비스
  - 주요내용 : 제조업체근로자의 여가, 체력증진, 문화체험 활동
  - 수행기관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복지관
- ④ 선원가족 위기개입서비스
  - 주요내용 : 선원가족의 부부관계 증진, 가족캠프 등
  - 수행기관 : 절영종합사회복지관(영도구) 외1
- 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자존감 향상 및 행복한 가족 만들기
  - 주요내용 : 재무관리를 통한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미래자산 형성 지원
  - 수행기관 : 연제구·당감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사회복지관
- ⑥ 급성기 심혈관 질환후 집중관리서비스
  - 주요내용 : 심혈관 중재시술 및 심혈관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자에게  
검사 및 방문 관리
  - 수행기관 : 동아대병원 임상시험센터
- 區 개발형 사업(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 사업명 : 장애인특수치료서비스 사업
  - 주요내용 : 장애인 언어·감각·미술·원예·수영 통한 특수 치료
  - 수행기관 : 선아의 집, 남광종합사회복지관

## 라. 신청 및 지원실적

- 서비스 신청 : 총 1,560건
  - ▷ 표준형 1,090건 / 시개발형 424건 / 구개발형 46건
- 지원실적 : 430,041천원 (국비 301,029천원 시비 115,079천원 구비 13,933천원)
  - ▷ 표준형 259,293천원 / 시개발형 77,860천원 / 구개발형 92,888천원

##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 1.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 가. 추진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나. 추진경과

- '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 하위법령 제정 및 주요기준 정비('99.10~2000. 4)
- 구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2000. 5. 1)
- 소득·재산조사 (2000. 5~7월)
- 급여신청 접수 및 자산조사 실시(2000. 5~9월)
- 수급자 선정 및 각종급여 개시(2000.10. 1~ )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실시(2003. 1. 1~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05. 7~ )

#### 다. 주요내용

근로능력여부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수급권자 범위 확대 및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주거 급여 신설,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급여 종류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제도권내에 포함 되지 않는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 라. 통합조사팀운영

각종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중지 관련 방법을 개선하여 복지대상자 간 신청 내용의 형평성·신속성·정확성·공정성 도모하고, 업무의 전문화로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운영시기 : 2005. 02. 19 ~ 계속

○ 주요업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방문조사 및 선정, 중지, 변경 등
- 차상위계층(일반·자활·장애인·의료) 방문조사 및 선정, 중지 등
- 한부모가족 방문조사 및 선정, 중지, 변경업무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특별연계보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을 위한 조사

○ 2009년 통합조사팀운영 실적

- 국민기초수급자 조사 : 선정 828세대, 부적합 356세대, 중지 388세대
- 한부모가족 조사 : 선정 196세대, 부적합 59세대, 중지 73세대
- 차상위계층 조사 : 선정 381세대, 부적합 69세대, 중지 87세대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특별연계보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 67명, 부적합 12명)

### 마.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실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원금액(천원)	비 고
국고보조사업			21,971,186	
구 분	생계·주거급여	4,518가구	15,769,604	수급자
	주거급여	4,336가구	4,031,889	수급자
	교육급여	1,255명	1,070,875	수급자 중·고 입학금, 수업료
	해산·장제급여	151명	77,083	수급자
	차상위양육	2,469세대	72,413	차상위
	월동난방비	907세대	45,400	수급자, 차상위
	에너지보조금	4,604세대	560,275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교육장려금	5,938명	343,647	수급자, 차상위 자녀

바.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09.12월)

(단위 : 명)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소 계		소 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합 계	4,969	8,459	4,873	8,285	96	174
서 1 동	446	753	440	744	6	9
서 2 동	354	584	347	572	7	12
서 3 동	406	690	400	677	6	13
금 사 동	317	537	311	528	6	9
부곡1동	539	939	529	920	10	19
부곡2동	228	381	228	381		
부곡3동	263	457	257	442	6	15
부곡4동	364	600	355	585	9	15
장전1동	208	354	200	339	8	15
장전2동	153	202	148	191	5	11
장전3동	282	453	282	453		
선두구동	109	157	108	156	1	1
청룡노포동	153	243	153	243		
남 산 동	649	1,183	634	1,161	15	22
구서1동	195	382	190	363	5	19
구서2동	277	513	265	499	12	14
금 성 동	26	31	26	31		

사.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재산의 소득 환산율

구분 \ 종류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 급 권 자	4.17%	6.26%	100%
부양 의무자	재산종류 구분 없이 4.17%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9(월/만원)	49	83	108	133	157	182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4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지원 내 용 〉

구 분	내 용
생계급여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 급여제
주거급여 (현금·현물)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 - 자가가구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현금급여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가구등의 주거환경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 「집수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물급여
교육급여	❖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인 년1회 106천원) 단, 2002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는 없고, 부교재비는 32천원 지급 ❖ 학용품비 : 연2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자녀 전원 (1인당 44천원, 학기당 22천원씩 2회)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1명당 500천원(쌍둥이 500천원 추가)
장제급여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근로무능력자 가구 500천원, 근로능력자 가구 400천원 지급
의료급여	❖ 전수급자 의료급여1종 ☞ 전액, 의료급여2종 ☞ 85% 지원

〈 예 산 현 황 〉

(단위 : 천원)

계	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비등)	자 활 지 원			
		계	자활근로 사업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실비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27,167,454	21,970,184	2,598,635	2,219,700	5,670	373,265

## 2. 자활사업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특례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였다.

### 가. 선정기준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도 판정 기준)로서,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비 지급이 가능하다.

### 나. 2009년 자활사업 내용

구분 (주체)	사업유형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별)	실시방법 (직접시행, 민간위탁)	참여인원					예산 (천원)	비고
				소계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		
총계				328	243	56		29	2,048,706	
시· 군· 구	자활공동체	소계(4개소)		11	5	4		2	16,549	
		청결나라	민간위탁	3	1	1		1		
		차사랑세차	"	2	2					
		한울건축	"	3	1	2				
		한마음농원	"	3	1	1		1	16,549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소계(4개소)		45	21	10		14	429,252	
		한마음공방	민간위탁	3	1	1		1	46,718	
		해피클린청소	"	21	12	6		3	211,580	
		자활도우미	"	1	1				260	
		복지업무도우미	직접시행	20	7	3		10	170,694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소계(8개소)		89	68	8		13	588,876	
		장애통합교육보조원	민간위탁	10	8			2	81,532	
		그린재활용	"	10	6	2		2	96,946	
		행복돌보미간병	"	17	14	1		2	130,880	
		깔고미이불빨래방	"	5	2	1		2	46,797	
		자활인큐베이터사업	"	25	20	1		4	51,185	
		결식아동도시락배달	직접시행	5	2	3			49,786	
		보육시설도우미	"	12	11			1	91,317	
	학교도서관도우미	"	5	5				40,433		

구분 (주체)	사업유형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별)	실시방법 (직접시행, 민간위탁)	참여인원					예산 (천원)	비고
				소계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 군· 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소계(9개소)		162	128	34			1,009,943	
		문안도우미	직접시행	3	2	1			22,214	
		동환경정비사업	"	21	16	5			123,225	
		녹화사업장관리	"	12	11	1			95,959	
		옥외광고물정비	"	20	11	9			121,180	
		공동자립장사업	"	14	13	1			87,568	
		금정도서관도우미	"	3	2	1			18,016	
		복지시설도우미	"	84	68	16			504,178	
		학교시설지원	"	3	3				25,330	
	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	"	2	2				12,273		
디딤돌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민간위탁	8	8				4,086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소계		13	13				0	
		취업알선		4	4				0	
		자활직업훈련		7	7				0	
		직업적응훈련		2	2				0	
		창업지원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다. 대상자 참여사업 종류(근로능력점수표에 의거 분류)

자활급여종류	기준	근로능력 점수	
노동부 자활사업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70점 이상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욕구가 높은 자 · 기술습득정도,노동강도가 높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70점 이상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51~69점
	사회적일자리형		
자 활 근 로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이 가능한 자	41~50점
	디딤돌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 3. 저소득 주민 보호

#### 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용자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을 용자해 주고 있다.

#### □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용자

- 용자대상 : 보증금 5,000만원이내의 전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주하는 저소득무주택자
  - 2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용자한도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고3,500만원 이내)
- 용자 신청 시기
  -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 상 전입일중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해당주택 1년 이상 경과,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용자조건
  - 대출기관 :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 이 율 : 연2%(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 용자 제외자
  - 부동산 또는 중형자가용승용차 소유자, 신용불량거래자 등
  -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 2009년 용자추천실적 91건 2,600백만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 용자대상 : 신청일 현재 동일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자
- 자금용도
  - 영세상행위 자금,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자금, 전세자금, 재학생 학자금, 의료비 등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용자한도 : 2천만원 이하
- 용자조건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이자 : 연3%(거치기간 중 무이자)
- 보증조건
  - 신용대출(1,000만원이하) : 재산세 2만원 이상인 자 1명
  - 담보대출(2,000만원이하)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함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구서동 지점
- 2009년 용자실적 : 9건 10,000천원
- 2010년 용자계획 : 20건 200,000천원

□ 생업 자금

- 목 적 : 저소득층 주민 중 생업에 필요한 자금용자로 자활자립 기반마련
- 용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층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며 재산 1억원 이하인 자
- 용자취급기관 : 국민은행
- 연 이 율 : 연 3%
- 용 자 기 간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무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2009년 용자실적 : 2건 30,000천원
- ※ 문의처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519-4311~4315), 각 동 주민센터

**나. 영구임대·전세임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귀순북한동포, 철거세입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여 지구별 예비입주자를 관리주체(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의 정기 또는 추가 입주자 선정 요청 시 통보하고 있다.

**< 예비입주자 추천현황(2009년) >**

사업주체	사 업 명	추천세대	비 고
대한주택공사	영구임대	316	
	전세임대	384	
	매입임대	182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	56	
	매입임대	80	

**다.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려운 세대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장학금 지급실적은 다음과 같다.

**< 장학금 지급 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급회수	중 학 생		고등학생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02년	60	15,000	1회	30	6,000	30	9,000
2003년	60	15,000	1회	30	6,000	30	9,000
2004년	60	15,000	1회	30	6,000	30	9,000
2005년	35	13,000	1회	15	3,000	20	10,000
2006년	30	10,500	1회	15	3,000	15	7,500
2007년	30	12,000	1회	15	4,500	15	7,500
2008년	30	12,000	1회	15	4,500	15	7,500
2009년	30	12,000	1회	15	4,500	15	7,500

**라.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전문직 자원봉사자로 금정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조직 구성하여 2000년부터 운영해온 순회봉사단을 2010년에도 복지관, 교회 등의 장소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밀착 봉사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 순회봉사단 구성 : 6개 분야 전문직 자원봉사자
  - ▷ 보건·의료분야, 이·미용, 장수사진촬영, 시력검진, 생활상담, 무료급식
- 수혜대상 : 금정구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수급자 등 300여명
- 운영일시 : 상·하반기 각 1회
- 장 소 : 상반기(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하반기(교회 등)

**마. 이웃돕기 성금 모금**

- 모금기간 : 2009. 12. 1 ~ 2010. 1. 31
- 모금실적 (2010. 1. 31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우리구 목표액	실 적 ( 모 금 액 )					목표 대비 (%)	비고
		총 계	성 금			성 품		
			소 계	일 반	지 정			
계	222,640	373,273	285,463	235,337	50,126	87,810	168	
구	222,640	199,061	133,891	118,676	15,215	65,170		
동		174,212	151,572	116,661	34,911	22,640		

※ '09모금액 452,669천원 (성금 373,144 성품 79,555) ▷ 전년 대비 79,896원 감소  
 ▷ (주)세정에서 2009년 대비 성금(81,151천원)감소 및 성품(24,287천원)감소

- 언론사별 성금 기탁내역

(단위 : 천원)

총 계	MBC	KNN	KBS	공동모금회	기 타
373,144	50,924	33,703	230,549	57,968	0

## 바. 긴급지원제도 실시

### □ 긴급지원제도

기본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 □ 지원 대상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단전되어 1개월 경과일 때(소한기 제한기 부설 포함)

### □ 지원요청 또는 신고자

- 요청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요청처 : 구청 긴급지원담당(☎519-4784~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 지원기준

- 재산 13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00% 또는 150%이하
- ▷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1회),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 곤란한 경우 의료 지원

□ 긴급지원 기간 및 내용

- 단기지원원칙 :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1개월	1회	1개월	1개월	1개월
지원금액	1인 345~ 6인 1,279	300만원 이내	2인 304~ 6인 667	1인 422~ 6인 1,5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생 교육비</li> <li>· 연료비 : 70(동절기10 ~ 3월)</li> <li>· 해산비·장제비 : 500</li> <li>· 단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 500</li> </ul>

- 2009년 지원 실적 : 669건(생계405/의료220/주거3/교육35/장제6) / 631,955천원

# 제4절 의 료 급 여

## 1. 의료급여 제도

###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종 별	대 상
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세대,</li> <li>❖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중화운동 관련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재민 및 의사자, 의사자의 유족</li> </ul>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된 세대</li> </ul>

#### < 의료급여 현황 >

(2009. 12. 31기준)

유형별 동별	1종		2종		국가유공자		보장시설수급자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시 설 명	세대수
합 계							계(18개소)	832
서 1 동	290	367	168	404	9	21	성애원	76
서 2 동	236	289	123	305	19	38	동성원	78
서 3 동	272	353	142	364	20	49	남광복지원	70
금 사 동	236	320	96	226	4	7	희락원	57
금 성 동	21	22	7	11	2	6	신망애요양원	60
부곡1동	381	524	155	402	36	79	애광양로원	2
부곡2동	162	207	67	178	11	22	동래양로원	96
부곡3동	184	236	89	227	11	21	선아원	46
부곡4동	265	360	104	253	15	28	애광치매요양원	118
장전1동	141	186	68	171	8	18	애광요양원	75
장전2동	125	131	39	87	6	11	신망애치매요양원	52
장전3동	199	255	81	194	12	17	동래노인요양원	43
남 산 동	413	563	246	627	36	77	부산아동일시보호	3
구서1동	110	175	73	210	14	25	성바로요양원	18
구서2동	160	218	118	303	14	28	살림쉼터	3
선두구동	89	107	19	52	6	7	사랑의집	12
청룡노포동	119	148	41	102	11	21	샬리홈	12
							안평노인요양원	9
							성심어머니집	2

## 나. 의료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

- 의료급여의 범위에 제외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특진 보조기, 의치, 의한,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제3자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한 진료
  -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 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조건표 〉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 반	장애인
1차 의료급여	의원	원내직접조제	원내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25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처방조제	무료	무료	무료
			처방조제	무료	무료	무료
	약국	직접조제	직접조제	900원	900원	좌동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무료	
처방조제			500원	1500원		
2차 의료급여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원내직접조제	그 외의 경우	1,500원	총진료비의 15%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직접조제	2,000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원내직접조제	그 외의 경우	2,000원	총진료비의 15%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직접조제	2,500원		
	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총진료비의 10%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 제5절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

### 1. 『노숙인 쉼터』 입소자 보호

1998년 12월 15일에 금정구 금사동 50-1번지에 「금정 희망의집」(정원60명)을 개소하여, 쉼터에 보호중인 노숙인에게 무료숙식(급식은 1일 2식, 토, 일, 공휴일은 3식)을 제공하였고, 병약자들에 대한 의료구호 체계를 마련하여 의료원 입원 등 쉼터운영에 만전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거리 노숙인 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해 자립의 기회 제공과 집중 상담 등 연고자를 계속적으로 추적하여 귀향 유도에 힘써 왔다.

#### 가. 2009년 노숙인 쉼터 『금정희망의 집』 입소 인원

(단위 :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 호 평균인원	59	50	52	50	49	48	46	46	45	47	52	58

#### 나. 2008 ~ 2009년도 노숙인 쉼터 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집 행 액			
		소계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2008	207	206	116	67	23
2009	200	200	117	67	16

### 2. 부랑인 선도

일정한 주거 없이 전철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를 배회하면서 시민에게 불편과 혐오감을 주는 알코올 중독자, 비행청소년 등에 대하여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유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가. 선도 대상

- 일정한 주거가 없이 구걸행위를 하는 자
-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18세 이상의 자로써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자
- 신체장애자로 고성능스피커를 설치한 손수레를 끌며 구걸행위를 하는 자
- 부랑인(아) 본인이 시설에 보호를 원하면서 구청장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 경찰관서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이 있는 자
- 연고자가 있으면서도 잡비조달 및 무료감 해소를 위해 구걸행위를 하는 자

### 나. 중점 선도 지역

- 노포동 전철역 주변 등 각 전철역사 및 다중집합장소

### 다. 부랑인 조치

- 합동단속(구, 경찰)으로 부양의무가 없거나 무능력 부랑인(아)은 사회 복지시설에 적극 수용
- 특수집단의 조종에 의한 구걸행위 시 조사의뢰
- 연고자가 있는 자는 즉시 귀가 조치